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7-31

서 울 행 정 법 원

제 6 부

판 결

사 건	2018구합6140 주민세(양도소득세할) 징수처분 취소
원 고	A
피 고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
피고보조참가인	[redacted]시장
변 론 종 결	2019. 6. 19.
판 결 선 고	2019. 8. 23.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2005. 10. 10. 원고에게 한 수시분 주민세(양도소득세할) 9,850,280원(가산세 포함)의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이 사건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7-31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5. 6.경 [redacted]구 B아파트 C호에 대한 입주권(이하 '이 사건 입주권'이라 한다)을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원고는 그와 관련하여2005. 5. 31. [redacted]세무서장에게 2004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97,284,380원 및 주민세(양도소득세할) 9,728,430원을 신고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는 않았다.

나. 원고가 위 주민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자, [redacted]구청은 2005. 10. 10. 원고에게 납부기한을 2005. 10. 31.으로 하여 주민세 10,113,670원(납부불성실 가산세 포함, 이하 '이 사건 주민세'라 한다)을 징수·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그 후에도 원고가 위 주민세를 체납하자, 피고보조참가인은 2006. 1. 1. [redacted]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주민세 징수권을 이관받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 소유 재산을 압류하였다.

순번	압류물건	압류일자	해제일자
1	우체국 보험 해약환급금	2009. 5. 7.	
2	우체국 보험 해약환급금	2011. 5. 30.	2012. 2. 14.
3	자동차(D)	2016. 9. 26.	

라. 원고는 2018. 1. 10. '이 사건 주민세 납부고지서를 송달받은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처분 관련 징수권은 시효소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 6. 19. 각하 및 기각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가 제4호증, 을나 제3,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7-31

아래와 같은 이유로 주위적으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예비적으로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한다.

가. 이 사건 주민세 납부고지서가 원고에게 송달되지 않았다.

나. 이 사건 처분에 따른 주민세 납부기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징수권이 시효소멸하였다.

다. 이 사건 주민세는 양도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된 것인데, 양도소득세에 대한 징수시효가 완성된 이상 이 사건 주민세도 더 이상 징수할 수 없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주위적 청구(취소 청구)에 대한 본안전 항변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은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구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내지 제74조,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의 각 규정에 따르면, 지방세인 주민세 부과처분을 다투기 위해서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아니면 그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를 하고, 그에 대한 결정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앞서 거시한 증거들, 을가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도 좋을 것인데(대법원 1992. 12. 11. 선고 92누13127 판결, 대법원 1992. 3. 27. 선고 91누3819 판결 등 참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7-31

조), 피고는 2005. 10. 10.경 이 사건 주민세 납부고지서를 원고의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redacted]구 E로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위 등기우편이 반송되지도 않은 점, ② 피고가 2005. 8. 10.경 위 원고 주소지로 발송한 균등할 주민세의 경우 원고가 이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였던 점, ③ 이 사건 주민세 납부고지서가 발송된 이후 우체국 보험 해약환급금에 대한 압류가 있었음에도, 원고가 위 압류 무렵 이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 제기를 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주민세 납부고지서가 위 원고 주소지로 발송된 무렵 이를 송달받았고, 이 사건 처분의 내용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취소청구는 제소기간이 경과된 이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5. 예비적 청구(무효확인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납부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여 무효라는 취지의 주장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징수권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 대하여

1)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30조의5 제1항, 지방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14조의3,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는 납세고지에 의한 납부기한으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그러나, 구 지방세법 제30조의6 제1항 제4호, 제30조의6 제2항 제4호, 지방세기본법 제40조 제1항 제4호, 제40조 제2항은, 위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압류로 인하여 압류해제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중단되고 그 후부터 새로이 진행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7-31

이 사건 주민세의 납부기한 다음날인 2005. 11. 1.부터 5년이 경과하기 이전인 2009. 5. 7. 이 사건 주민세의 징수를 위하여 원고의 우체국 보험 해약환급금에 대하여 압류가 이루어졌고, 2011. 5. 30. 위 해약환급금에 대하여 다시 압류가 이루어졌으며, 위 압류는 2012. 2. 14. 무렵 해제되었으나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이전인 2016. 9. 26. 다시 원고 소유 자동차에 대한 압류가 이루어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한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위 각 압류로 인하여 중단되어 완성되지 않았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압류의 대상이 된 우체국 보험 해약환급금은 납입액이 300만 원 미만인 보장성보험의 해약환급금에 해당하므로 구 국세징수법(2016. 3. 2. 법률 제140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31조 제13호, 구 국세징수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36조에 따라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나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09. 5. 7. 압류 당시 보험 해약환급금은 4,402,090원이었고, 2011. 5. 30. 압류 당시 보험 해약환급금은 4,402,010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각 우체국 보험 해약환급금은 위 각 규정에 따른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위 각 보험 해약환급금은 400만 원 미만의 보험 환급금청구권을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우체국예금 · 보험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3항, 우체국예금 · 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3에 의하더라도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또한, 원고는 압류해제 신청으로 인하여 압류가 해제된 경우 그 시효중단의 효력이 소급하여 소멸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압류의 해제는 소멸시효에 따른 중단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7-31

사유가 종료되어 소멸시효 기간이 새로이 진행하는 사유에 해당할 뿐이고(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다239840 판결 취지 참조), 원고 주장과 같이 압류해제 신청이 있었다고 하여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소급하여 소멸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양도소득세 징수시효 완성에 따른 이 사건 주민세 징수 불가 주장에 대하여

을가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입주권 양도 관련 양도소득세가 2017. 5. 12. '무재산으로 인한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결손처리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주민세는 위 양도소득세와는 세목, 목적 등이 전혀 다른 별개의 조세채무인바, 위 양도소득세가 징수시효 완성으로 결손처리되었다고 하여 이 사건 주민세를 더 이상 징수할 수 없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6. 결 론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redacted]

판사 [redacted]

판사 [redacted]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7-31

[별지]

관계 법령

■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의 세목, 과세객체, 과세표준, 세율 기타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서는 이 법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조례로써 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조례의 시행에 따르는 절차 기타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4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의 위임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규정된 그 권한의 일부를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제30조의5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이하 이 節에서 "地方稅徵收權"이라 한다)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이 경우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오납으로 인하여 생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청구권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③ 지방세징수권의 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의한다.

제30조의6 (시효의 중단 및 정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7-31

① 지방세징수권의 시효는 다음 각호의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때에 중단된다.

1. 납부 또는 납입에 관한 고지
2. 독촉 또는 납입최고
3. 교부청구
4. 압류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단된 시효는 다음 각호의 기간을 경과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1. 고지한 납부 또는 납입기간
2. 독촉 또는 납입최고에 의한 납부기간
3. 교부청구중의 기간
4. 압류해제까지의 기간

제82조 (국세기본법등의 준용)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하여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을 준용한다.

■ 구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청구대상)

① 이 법에 의한 처분(申告納付 또는 修正申告納付를 한 경우에는 그 申告納付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이하 이 節에서 같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제73조 (이의신청)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7-31

①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도세중 공동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중 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구세(郡稅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시·군세{도세중 공동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중 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구세(郡稅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에 있어서는 시장·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친 후에 과세된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청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4조 (심사청구)

①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시장·군수의 결정에 대하여는 도지사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각각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

■ 지방세기본법

제39조(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

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이하 "지방세징수권"이라 한다)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時效)로 인하여 소멸한다. 이 경우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지방세징수권의 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을 따른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7-31

제40조(시효의 중단과 정지)

① 지방세징수권의 시효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중단된다.

1. 납세고지
2. 독촉 또는 납부최고
3. 교부청구
4. 압류

② 제1항에 따라 중단된 시효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1. 고지한 납부기간
2. 독촉 또는 납부최고에 따른 납부기간
3. 교부청구 중의 기간
4. 압류해제까지의 기간

■ 구 국세징수법(2016. 3. 2. 법률 제140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압류금지재산)

다음 각호의 재산은 이를 압류할 수 없다.

13. 체납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45조(수급권의 보호)

③ 제2항 각 호의 보험금청구권을 제외한 보장성보험의 보험금청구권과 환급금청구권에 대하여는 보험수익자 또는 보험계약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최저보장금액"이라 한다)은 압류할 수 없다. 이 경우 보험계약이 여러 개이면 그 보험금청구권 또는 환급금청구권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7-31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의3(소멸시효의 기산일)

법 제30조의5 제1항 후단에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라 함은 납세고지에 의한 납부기한(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한을 말한다)의 다음날을 말한다. 다만, 특별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하는 지방세에 있어서는 당해 특별징수세액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의 납입기한(납입기한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한을 말한다)의 다음날을 말한다.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지방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 법 제39조제1항 후단에 따른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납세고지에 의한 납부기한(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한을 말한다)의 다음 날로 한다. 다만, 특별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하는 지방세의 경우에는 해당 특별징수세액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의 납부기한(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한을 말한다)의 다음 날을 말한다.

■ 구 국세징수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압류금지 재산)

법 제31조 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납입액이 300만원 미만인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금·만기환급금과 개인별 잔액이 120만원 미만인 예금(적금·부금·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부칙]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7-31

제2조 (압류금지 재산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압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3(압류금지 금액의 범위)

법 제45조 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400만원을 말한다. 끝.